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144774 손해배상(기)
원 고 한소영
대구 북구 팔거천동로 52(구암동, 칠곡미래타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조성구
피 고 황유나
서울 송파구 법원로4길 10, 1301호(문정동, 힐스테이트에코문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은이
변 론 종 결 2024. 3. 14.
판 결 선 고 2024. 3.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김태훈은 2021. 5.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나. 피고는 2021. 9.경 대구에 있는 어학원을 다니다가 그 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김태훈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김태훈과 여러 차례 모임을 통해 친해졌고 2022. 4. 1. 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김태훈과 교제하면서 2022. 7.경부터 동거하였고, 김태훈의 아버지를 만나고 친척 모임에도 함께 가는 등 김태훈의 가족 및 친척들과도 교류하였고, 피고 역시 자신의 부모님에게 김태훈을 소개시키는 등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였다.

라. 피고는 2023. 2. 4.경 피고의 친구, 김태훈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김태훈이 피고에게 거짓말을 하고 집착을 하는 등의 이유로 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 날인 2023. 2. 5. 김태훈과 헤어지고 교제관계를 정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피고의 각 주장

원고는, 피고는 김태훈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태훈과 교제하며 동거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김태훈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태훈과 교제하는 기간 동안 김태훈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

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다룬다.

나. 관련 법리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불법행위의 경우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즉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다.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위에서 든 각 증거들, 그 밖에 원·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김태훈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김태훈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김태훈과 교제하면서 김태훈의 거짓말들로 인해 김태훈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김태훈과 교제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22. 10. 18.경 김태훈과 함께 있던 중 김태훈의 휴대전화에서 원고와 김태훈의 결혼식 사진을 보게 되었고 김태훈에게 결혼을 하였는지 묻자 김태훈은 결혼한 사실은 있으나 현재는 이혼한 상태라고 거짓말하였다. 김태훈은 피고가 위 사진을 보고난 다음날 연락을 잘 받지 않자 '내가 설명할게. 이혼한 것도.'라고 메시지를 보내 명시적으로 이혼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하였다. 김태훈은 위 어학원에서 강사로 근무

무할 당시에 수강생들과 파티를 갖는 등 사적인 모임을 자주 가졌는데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다른 수강생들 역시 김태훈이 결혼한 사실이 없는 미혼이고 여자친구도 없다고 생각하였을 정도로 치밀하게 자신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겨왔다.

② 피고는 김태훈과 교제를 시작한 이후 김태훈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주변 지인들을 소개시켜주고 피고 부모님의 선물을 챙기는 등 진지한 관계를 전제로 한 행동들을 보여 피고 역시 자신의 어머니, 친척들에게 김태훈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등 공개적으로 교제를 하였고, 어머니에게 김태훈과의 동거를 승낙받기도 하였는바 이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할 수 없는 행동으로 보인다.

③ 원고와 김태훈은 피고가 김태훈과 교제하는 기간 동안 사실상 별거 상태(원고는 김태훈과 사이가 좋지 않아 자신의 부모님에게 김태훈이 업무로 인해 장기간 외국에 가있게 되었다고 하였다)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명절, 크리스마스 등도 김태훈과 함께 보냈기 때문에 김태훈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김태훈의 주선으로 김태훈의 가족, 친척, 지인들을 여러 차례 만났는데 그 무렵 김태훈의 주변인들이 피고에게 김태훈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말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 역시 김태훈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김태훈의 가족, 친척, 지인들과 자연스럽게 왕래하며 지내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김태훈이 2023. 2. 5.경 촬영한 피고의 동영상(갑 제2호증)에서 피고가 "응. 오빠가 잘못된 것도 알고, 오빠가 유부남인 것도 알고. 맞지?"라고 말한 것을 근거

로 피고는 김태훈과 교제하던 중 김태훈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2022. 10. 15.경 김태훈이 결혼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안 이후에 김태훈이 이혼하였다고 한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김태훈을 이해하고 다시 잘 만나보려고 하였는데, 2023. 2.경 김태훈이 자신의 학력, 경력 등에 대해서도 피고를 속였다는 사실을 추가로 알게 되어 그 상황에 이르러서야 김태훈이 사실은 이혼을 하지 않은 유부남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가사 피고가 위 영상에서 "오빠가 유부남인 것도 알고"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유부남인 것도 알고'라는 말만으로는 피고가 이전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인지, 그 날에 이르러서야(김태훈이 피고에게 했던 거짓말들을 이유로 다투는 과정에서) 김태훈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대화내용만으로 피고가 그 이전부터 김태훈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가 김태훈과 사이에 위와 같은 대화를 주고받은 직후 김태훈과의 관계를 정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김태훈과 다투는 과정에서 김태훈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처음 알게 되었고 곧바로 김태훈과의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김태훈이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피고도 김태훈이 법률상 배우자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태훈이 2022. 11. 15.경 지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이번에 피고도 내가 결혼한 사실이란 거 알게 되고 최근에 많은 일 있었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고에게 원고와 김태훈의 결혼식 사진을 들려서 결혼하였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뿐더러 그 밖에 김태훈이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은 김태훈과 그 지인들의

인식을 기초로 나눈 대화들에 불과하여 이를 기초로 당시 피고의 인식이 어떠하였는지 파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⑦ 원고는, 피고가 김태훈의 아버지까지 만난 사정을 들며 김태훈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김태훈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김태훈의 아버지까지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김태훈의 아버지를 만났을 무렵 피고와 김태훈이 나눈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김태훈이 아버지를 만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원고는, 그 자리에서 김태훈의 아버지가 피고 및 김태훈이 부정행위 하는 것에 대해서 나무랐다고 하면서 피고가 김태훈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사후적으로 작성된 김태훈 아버지 사실확인서(갑 제27호증)의 기재는 원고 및 김태훈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그 무렵 피고와 김태훈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피고가 김태훈의 아버지를 처음 만난 이후에도 김태훈은 계속해서 아버지가 피고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고 피고와 김태훈의 관계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바, 김태훈의 아버지가 피고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피고와 김태훈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나무라는 말을 하였으리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⑧ 피고는 김태훈과의 관계를 정리한 이후에 김태훈이 2023. 4. 12.경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을 통해 피고에게 안부를 물어오자 김태훈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들어가 보게 되었고 거기서 이미 이혼한 사이인줄 알았던 원고와 김태훈이 계속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원고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원고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 원고와 피고의 전화통화(갑 제4호증)에서 피고는 "이혼사실 알았을 때도 저도 그

것도 솔직히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원고와 김태훈이) 이제 진짜 계속 만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라고 말을 하는데 위 대화 뿐 아니라 통화내용 전반에서 원고와 김태훈이 이혼한 것을 전제로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 위 통화내용 중에 피고가 "저도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이미 뭐 좀 잘못된 거긴 한데. 어쨌든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저도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라고 말을 한 것은 만약 김태훈이 원고와 이혼했다는 말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 자신이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과 교제한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에 한 말로 보인다. 만약 피고가 김태훈과 교제할 당시 원고와 김태훈이 혼인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는데 굳이 먼저 원고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통화를 하며 대화를 시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⑨ 원고는, 피고가 김태훈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한 이후인 2023. 2. 11.에도 김태훈과 만나서 카페에 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위 날짜에 김태훈을 만난 것은 그동안 동거하면서 김태훈의 집에 있었던 피고의 짐을 챙기기 위한 것이어서 부정행위에 해당할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김태훈과 헤어진 이후 오히려 김태훈이 피고에게 계속 안부를 묻는 등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이에 특별한 응대를 하지 아니하였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2023. 2. 11.에 있었던 피고의 행위를 부정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욱

신성욱



열람용

정본입니다.

2024.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주사 이현아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